



네이버 패키지여행 상품 콘텐츠 제공 계약서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TK트래블(이하 '제공자'라 한다)간에 패키지여행 상품 콘텐츠 제공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전자문서인 계약서에 상호 전자서명한 후 각각 파일 또는 인쇄 형태로 보관한다.

2023년 2월 17일

'네이버'		'제공자'	
네이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정자동, 1784) 사업자등록번호: 220-81-62517 대표이사 최 수 연	날인(서명) 	TK트래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이문동) 5층(이문동, 명경빌 딩)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대표이사 강 일 구	날인(서명) 

‘본 계약’은 ‘제공자’가 ‘네이버’의 ‘서비스’에 상품 ‘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계약내용

계약명	네이버 패키지여행 상품 컨텐츠 제공 계약서
제공자	TK트래블
계약기간	2023년 2월 20일 ~ 2024년 2월 19일 (1년)
컨텐츠 제공방식 및 주기	1. API 연동 방식 선택시 가. 제공방법: API 연동방식 나. 제공형식: XML 또는 JSON 다. 제공주기: 실시간 또는 일 1~3회 2. 상품 등록/관리 플랫폼 방식 선택시: 상품 등록/관리 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 등록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패키지여행 상품 정보 수기 등록
서비스 영역	가. 네이버 통합검색 (PC, 모바일 등 접근 기기의 종류 불문) 나.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 (PC, 모바일 등 접근 기기의 종류 불문) 다. 네이버 BAND (PC, 모바일 등 접근 기기의 종류 불문)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있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의 내용 수정이나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
서비스 형태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 내 패키지여행 상품(상품정보, 이용자후기 등 포함), 입점사명(여행사 CI 포함), 예약하기 연결 URL, 전화상담 및 상담예약 연결 URL,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 노출, 마이페이지(이용자 예약상태 및 결제 정보 등) 연동
서비스 정산방식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비율에 따라 ‘네이버’에 수익배분(수익배분 비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별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 5% - 단, 국내 골프 패키지 상품: 2.5%
이행보증	‘제공자’가 ‘네이버’에 대한 수익배분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일천만원(₩10,000,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설정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네이버’에 전달해야 한다.
특약사항	가. ‘제공자’는 ‘네이버’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컨텐츠’의 가격(세금 포함 결제금액)을 ‘제공자’의 앱/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네이버’의 ‘서비스’에 노출시켜야 한다. 나. ‘제공자’는 계약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네이버의 패키지여행 상품 서비스에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기타 ‘본 계약’의 상세한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의 ‘상품 컨텐츠 제공 일반조건’에 명시된다. ‘네이버’와 ‘제공자’는 ‘주요계약내용’ 및 ‘상품 컨텐츠 제공 일반조건’에 동의하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상품 콘텐츠 제공 일반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서비스’란 PC 및 모바일 등 접근 기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네이버’(본 조의 목적상, ‘네이버’의 국내외 자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국내외 Web, WAP, Application 등 모든 제공 형태를 이용한 유, 무선 인터넷 서비스, API 서비스 및 ‘네이버’가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콘텐츠	‘콘텐츠’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자’가 ‘네이버’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콘텐츠를 말한다. ‘본 계약’에서 정한 콘텐츠 이외의 추가 또는 삭제되는 목록은 담당자간 서면으로 상시 협의 가능하다. : ‘제공자’의 패키지여행 상품 정보, 이용자 예약 상태 및 결제 정보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상품 콘텐츠를 예약확정, 결제 및 이용완료 했을 경우 그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판매 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VAT) 포함, 단 ‘총 매출액’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금액은 부가 가치세(VAT) 불포함 금액으로 한다.]
이용자	‘네이버’에서 제작, 배포한 ‘서비스’의 온라인 웹사이트(PC, 모바일 등 접근 기기의 종류 불문)와 모바일 Application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콘텐츠 제공 방식 및 상호 역할)

1. ‘제공자’는 ‘콘텐츠’를 ‘네이버’에게 제공할 때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API연동방식 또는 상품 등록/관리 플랫폼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네이버’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두고 ‘네이버’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공자’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네이버’가 ‘서비스’ 제공화면의 디자인과 기능을 ‘네이버’의 UI 디자인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원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수정 또는 재배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3. ‘네이버’와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한다.
4.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5. 본 조에 규정된 상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 및 경비는 각자가 부담한다.

제3조 (양당사자의 의무)

1. ‘제공자’는 ‘네이버’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콘텐츠’의 가격(세금 포함 결제금액)을 ‘제공자’의 앱/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네이버’의 ‘서비스’에 노출시켜야 한다.
2. ‘제공자’는 ‘제공자’의 앱/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여행 ‘콘텐츠’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할 목적으로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에 보여지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고 해당 페이지에 따른 ‘콘텐츠’를 ‘네이버’에게 제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을 우회, 회피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공자'는 '네이버'의 서비스에 노출되는 '컨텐츠'의 가격과 '제공자'의 앱/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하여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노출 가격이 상이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공자'는 계약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네이버'의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네이버'가 '본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컨텐츠'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제9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네이버'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 '컨텐츠' 제공이 중단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네이버'가 '제공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배분액'을 일 산술평균한 금액] * ['컨텐츠' 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일수 기준)] * 70%
 - 다만, '제공자'가 '네이버'에게 '컨텐츠'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백만원에 '컨텐츠' 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일수 기준)을 곱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5. '제공자'가 '컨텐츠' 제공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제공자'는 1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 '네이버'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공자'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네이버'의 영업손실이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이버'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여 '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공자'는 즉시 위 권고를 수용하여 '컨텐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공자'가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네이버'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7.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미풍양속을 포함한 사회 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공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즉시 '네이버'에게 전달하며,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4조 (컨텐츠 제공의 대가 및 수익 배분)

1. '제공자'는 '네이버'가 '컨텐츠'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대가로서, '서비스'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에 대해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지급한다(이 배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액을 이하 '수익배분액'이라 한다).
2. 본 조에서 정한 수익배분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 가. 수익배분: '네이버'는 '본 계약' 체결 및 '컨텐츠'의 '서비스' 적용 후, 선택한 '컨텐츠' 제공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른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내역에 이의가 없을 경우,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수익배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제공자'에게 발행한다.
 - 1) API 연동 방식을 선택한 경우: 본 조에 정한 비율에 대하여 매월 '총 매출액'의 산정근거 및 수익 배분 일별 내역을 익 영업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네이버'에게 통보하고, '네이버'는 '제공자'의 예약 및 정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내역 확인
 - 2) 상품 등록/관리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매월 '총 매출액'의 산정근거 및 수익배분 일별 정산 내역 확인
 - 나. 산정근거: '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한 예약을 '네이버' 실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제공자'는 해당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수익배분액을 산정한다.
 - 다. 이의제기: '네이버'가 본 조 제 2 항 가호의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금액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되, 익월 5 일에서 10 일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네이버'는 제 2 항 가호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차액에 대해서는 익월 정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 라. 대금지급: '제공자'는 '네이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네이버'와 '제공자'는 '서비스' 내역 및 수익 배분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를 법이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자료를 작성, 관리할 것을 보장한다.
4. '제공자'는 '네이버'에 대한 '수익배분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이 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설정 등의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밀유지)

1. '네이버'와 '제공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또는 정보수령자가 더 이상 '기 밀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수 및 파기되어야 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 법 등은 사전에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하게 존속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모션)

1. '네이버' 및 '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자'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예약확정, 결제 및 이용완료한 '이용 자'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금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프로모션을 통하여 '네이버' 또는 '제공자'의 부담으로 '이용자'에게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금(이 하 '프로모션 금액'이라 한다)이 제공된 경우, '네이버' 및 '제공자'는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배분비율 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한다.
 - 가. '프로모션 금액' 산정 기준: '네이버' 및 '제공자'는 선택한 '컨텐츠' 제공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 른 정산 내역 확인 후 해당 내역에 상호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프로모션 금액'을 지출하여 부 담한 당사자는 '프로모션 금액'에 대한 인보이스(청구서)를 당월 말에 상대방에게 발행한다.
 - 1) API 연동 방식을 선택한 경우: 프로모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별 내역을 익영업일 이 내에 전자문서로 '네이버'에게 통보하고, '네이버'가 '제공자'의 예약 및 정산 관리 프로그램을 통 해 정산내역 확인
 - 2) 상품 등록/관리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일별 정산내역 확인
 - 나. 이익제기: '네이버' 또는 '제공자'가 본항 가호의 내역 및 '프로모션 금액'에 이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산 금액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되, 당월 말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항 가호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보이스(청구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차액에 대해서는 익월 정산에 반영하여 지급 한다.
 - 다. 정산 금액 지급: '네이버' 또는 '제공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보이스(청구서)를 접수한 익월 말일 이내 에 상대방에게 정산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등)

1. '제공자'는 '컨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네이버' 에게 '컨텐츠'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 한다.

2.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보장한다. 또한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내용, 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제공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특허 또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네이버'는 '제공자'의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4. 본 조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당사자는 이로부터 상대방을 방어하고, 이로 인한 총 비용(손해배상 포함)을 부담한다.

제8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네이버'는 '제공자'가 '네이버'를 통하여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제공자'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의 어떠한 행위도 '제공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네이버'는 '제공자'가 '네이버'를 통하여 판매하는 패키지여행 상품의 존재나 안정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공자'가 진다.
3. '제공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및 패키지여행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컨텐츠'의 업데이트 미반영, 잘못된 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제공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네이버'가 '제공자'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공자'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수정 또는 '네이버' 시스템 오류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 귀책사유자가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본 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양도 및 처분금지)

'네이버'와 '제공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제공자'와 '네이버'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공자'와 '네이버'는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 항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제공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 파산이 신청되거나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내려져 '본 계약'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할 경우

- 나.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 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제공이 7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 라. '네이버'가 합병, 영업양수도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와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함이 곤란하다고 '네이버'가 경영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4.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네이버'와 '제공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네이버'와 '제공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